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33호서식]

유해·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14일

신청인	성명	전화번호
	주소	
도급인	사업장 명칭	
	소재지	
	업종	주요생산품
	대표자 성명	근로자 수
수급인	사업장 명칭	업종
	소재지	
	대표자 성명	근로자 수
도급	도급 작업공정	도급공정 근로자 수
	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(월)	
	도급승인 기간	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붙임 서류	1.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(기계·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, 유해·위험물질의 종류·사용량, 유해·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) 2.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(안전작업절차, 도급 시의 안전·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·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)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검토	→	결 재	→	승인서 작성	→	통보
신청인		산업안전·보건 업무 담당부서		지방고용노동청 (지청)장		산업안전·보건 업무 담당부서		문서 발송 담당부서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